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2. 개정 사유

○ 선남·용암 지역은 대구시와 인접하여 공장의 신설과 유동인구 증가로 화재 및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선남119 소방안전센터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현장대응활동 체제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○ 사업부지 현황

- 위　　치 :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산 50-5번지(광영삼거리)
 - 면적 - 1,242㎡(375평)　　• 지목 - 임야
 - 공시지가 - 21,500원/㎡ (기준가격 : 26,703,000원)
- 현소유자 : 손성호(경북 김천), 안정옥(대구 달서)
- 건축면적 : 727㎡(220평) 〈1층 : 사무실·차고, 2층 : 대기실·회의실〉
- 사업기간 : 2014년 10월 ~ 2015년 12월
- 사 업 비 : 16억원정도 (도비 12억, 군비 4억)
 토지매입 및 제반경비 : 4억정도
- 예산반영 :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

※ 현.성주소방서 선남지역대 운영 현황

- 위　　치 : 선남면 도성리 732-2
- 부지면적 : 495㎡　　• 건축면적 : 112.58㎡
- 장　　비 : 펌프 1, 구급차 1　　• 인　　원 : 2명/1일 총 6명

○ 추진현황

- 2013.　3월 : 선남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협조 요청
- 2013. 4~12월 : 입지 후보지 물색 및 제반여건 검토
- 2014.　4월 : 의회 간담회 개최(4.21)
- 2014.　6월 :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(6.26)

○ 향후 추진계획

- 2014. 8~9월 : 추경 시 예산 수립
- 2014. 10월 : 사업부지 취득
- 2015. 3월 : 건물 신축공사 착공(성주소방서)
- 2015. 12월 : 건물 준공(성주소방서)

○ 기대효과

- 화재 등 재난예방 기능 강화 및 소방서비스 수혜 사각지역 해소
- 화재, 구조, 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활동 체제 강화

4. 참고 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○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소방은 화재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출동하여 초기 진화하여야 함에도 선남면과 용암면은 소방본서와 거리가 10 - 15km 되어 사실상 화재 및 안전에 사각지대이며

○ 특히 동부지역내 농공단지 및 중·소형 제조공장들이 영세하여 노후화된 소방시설물이 산재되어 화재 및 안전에 상당히 노출 되어 있으며

○ 참외 작업장 및 보온덮개 야적장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참외 재배농가는 향상 불안해하고 있으며 지역내 노약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시 조기에 이송 및 응급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혜자는 우리 군민의 재산 손실을 방지함으로 119 소방안전 센터를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